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8

발의연월일: 2020. 10. 28.

발 의 자:노웅래·윤재갑·윤준병

장철민・이수진(비)・윤미향

김두관 • 고영인 • 신동근

전혜숙 · 김홍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그어느 때보다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관리자 없이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동물원 등록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인수공통질병 전파, 할큄 등에 의한 상해 가능성 및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됨.

이에, 이 법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로 인하여 유기·방치될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금지행위 및 벌칙조문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제7조 및 제16조).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라 동물원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 또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 항제5호에 따른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유류

- 2.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 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제외한 야생동물(곤충류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육 등 공익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외래야생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제3호를 삭제한다.

-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 2. 제7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현행 제3조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 또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소재지, 보유동물의 현황(종, 개체수 등) 등을 명시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16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 지)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 또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물 전시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포유류2.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
	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 생동물 등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제외한 한 야생동물(곤충류를 제외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교육 등 공익을 목적으로 환경 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u><신 설></u>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 환경 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전시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 저 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관한 법률 | 제8조 각 호의 학 대행위
- 2.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 해를 입히는 행위
- 3. 광고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 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 을 방치하는 행위
-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행위 금	거로 인]하여	유기] 또	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	동물	분의
관리를	위하여	외래	야생	동물	보
호시설:	을 설치	• 운영	 를 할	수	있
<u>다.</u>					

∥7조(금지행위)	_
	_
	_
	_
	_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 각 호 의 학대행위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제2항 각 호 의 학대행위 <삭 제>

<삭 제>

|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에 따 른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벌금에 처한다.</u>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2. (생략)
-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u>자</u>

4. ~ 7.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 2. 제7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u>③</u>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